

1. 개정이유

어선사고 발생 시 외국인 승선원의 신속한 신원 파악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에 대응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과 조업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의2 제2항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3조의2를
외국인 선원의 신원파악을 위한 자료제공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하는
것으로 개정
- 나. 별표에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하는 방법과
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기관 의견조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와 출입국에 관한 자료로 한다.

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자료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, 정보시스템 연계 등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기준”을 “기준·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 비고 제4호 및 5호를 다음과 신설한다.

4.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기상특보가 발표된 구역에서 조업중이거나 입항한 어선의 소유자 및 선장에게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및 조업이 제한됨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.
5. 비고 제2호의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표된 구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할 안전본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
제3조의2(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. <신설> 제4조(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<u>기준</u>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. ②·③ (생략) 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	제3조의2(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와 출입국에 관한 자료로 한다.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자료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, 정보시스템 연계 등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. 제4조(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) ① ----- ----- <u>기준·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</u>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출항 및 조업 제한 기준</th><th>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</th></tr><tr><td>1. 태풍주의보 · 태풍경보 · 풍랑경보</td><td>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</td><td rowspan="2">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</td></tr><tr><td>2. 풍랑주의보</td><td>총톤수 15톤(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총톤수 30톤으로 한다) 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</td></tr></table>	구분	출항 및 조업 제한 기준	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	1. 태풍주의보 · 태풍경보 · 풍랑경보	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	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	2. 풍랑주의보	총톤수 15톤(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총톤수 30톤으로 한다) 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출항 및 조업 제한 기준</th><th>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</th></tr><tr><td>1. 태풍주의보 · 태풍경보 · 풍랑경보</td><td>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</td><td rowspan="2">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</td></tr><tr><td>2. 풍랑주의보</td><td>총톤수 15톤(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총톤수 30톤으로 한다) 미만</td></tr></table>	구분	출항 및 조업 제한 기준	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	1. 태풍주의보 · 태풍경보 · 풍랑경보	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	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	2. 풍랑주의보	총톤수 15톤(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총톤수 30톤으로 한다) 미만
구분	출항 및 조업 제한 기준	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															
1. 태풍주의보 · 태풍경보 · 풍랑경보	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	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															
2. 풍랑주의보	총톤수 15톤(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총톤수 30톤으로 한다) 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																
구분	출항 및 조업 제한 기준	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															
1. 태풍주의보 · 태풍경보 · 풍랑경보	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	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															
2. 풍랑주의보	총톤수 15톤(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총톤수 30톤으로 한다) 미만																

		어선(「어선법」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)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
3. 폭풍해일주의보·폭풍해일경보	-	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(「어선법」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)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

비고

1.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예상 항로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.
2.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의 합정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.
3. 안전본부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기상특보의 내용과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등을 1시간마다 방송하여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해야 하며, 어선의 대피 상황을 4시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필요 시 해양경찰서, 시·군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

4~5 <신 설>

	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	어선(「어선법」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)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
3. 폭풍해일주의보·폭풍해일경보	-	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(「어선법」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)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

비고

1~3 (생략)

4.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기상특보가 발표된 구역에서 조업중이거나 입항한 어선의 소유자 및 선장에게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및 조업이 제한됨을 문자 등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.
5. 비고 제2호의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표된 구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할 안전본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